



서대문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(연희동 110-8)

1. 건설관리과-6573(2015.04.14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우리구 소재 행정재산 연희동 110-8의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한 바,
3. 붙임 **용도폐지 결정조서와 같이 특이사항 없으므로**,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**용도폐지 결정**하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.

가. 용도폐지 재산

재산의 표시				용도폐지 결정 내역			비고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면적(m ²)	현 황	소유자	
연희동	110-8	도로	44.6	8	연희동 110-8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	서대문구	

- 붙 임 1. 용도폐지 결정 조서 1부.
2. 위치도 및 관련공부 일건. 끝.

주무관 **박종찬** 공공용지팀장 **代윤기환** 건설관리과장 **황도현** 안전건설교통국장 전결 05/11
이명균

협조자

시행 건설관리과-9039 () 접수 ()

우 120-7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/ http://www.sdm.go.kr
전화 1722 /전송 02-330-1648 / 부분공개(5)